

- 판매보수 인하 대상펀드 증권신고서 주요 변경 내용

1.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5. 31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12. 17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펀드코드 66777) <신설>	종류 C1(펀드코드 66777) 종류 C2(펀드코드 28704) 종류 C3(펀드코드 28705) 종류 C4(펀드코드 28706) 종류 C5(펀드코드 28708)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 : 가입제한 없음 <신설>	종류 C1 :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 종류 C1 가입고객으로 1 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3 : 종류 C2 가입고객으로 1 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4 : 종류 C3 가입고객으로 1 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5 : 종류 C4 가입고객으로 1 년이상 경과한 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종류 C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I, 종류F</u>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p> <p>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p> <p>(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⑥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p> <p>(가) 상기 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 년 1 월 10 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p> <p>(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제 25 조의 3 조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p>
<p>제 2 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 C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종류 C1, C2, C3, C4, C5, I, F 환매수수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제 2 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종류C</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종류 C1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종류 C2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종류 C3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3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종류 C4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2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종류 C5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1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현황, 연간(>></p>		<p>자료 업데이트</p>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p>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p>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p> <p>라. 운용자산 규모</p>		<p>요약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자료 업데이트</p>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p>	<p>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나. 임의해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문구 추가>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2.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주식)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4. 23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12. 17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 C1(펀드코드 28714) 종류 C2(펀드코드 28715) 종류 C3(펀드코드 28716) 종류 C4(펀드코드 28717) 종류 C5(펀드코드 28718)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마. 특수형태	<문구 추가>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 C1 :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 종류 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3 : 종류 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4 : 종류 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5 : 종류 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종류 C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u>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u>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p>(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도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p> <p>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p> <p>(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⑥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p> <p>(가) 상기 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 년 1 월 10 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p> <p>(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5 조의 3 조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1, C2, C3, C4, C5 환매수수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50% <개정 2010 년 5 월 3 일>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1 수익증권 <개정 2011 년 1 월 10 일>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2 수익증권 <신설 2011 년 1 월 10 일>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3 수익증권 <신설 2011 년 1 월 10 일>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4 수익증권 <신설 2011 년 1 월 10 일>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5 수익증권 <신설 2011 년 1 월 10 일>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현황, 연간(>		자료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u>2010 년 12 월 31 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u>2011 년 12 월 31 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요약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자료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문구 추가>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 1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3.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6. 14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12. 17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펀드코드 81765) <신설>	종류 C1(펀드코드 81765) 종류 C2(펀드코드 28735) 종류 C3(펀드코드 28736) 종류 C4(펀드코드 28737) 종류 C5(펀드코드 28738)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 : 가입제한 없음 <신설>	종류 C1 :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 종류 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3 : 종류 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4 : 종류 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5 : 종류 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종류 C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I, 종류F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p>(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p> <p>(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p> <p>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p> <p>(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⑥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상기 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제 25 조의 3 조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p>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1, C2, C3, C4, C5, C-e, l, F 환매수수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종류 C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 <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1 수익증권 <개정 2011년 1월 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 <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2 수익증권 <개정 2011년 1월 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3 수익증권 <개정 2011년 1월 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3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4 수익증권 <개정 2011년 1월 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2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5 수익증권 <개정 2011년 1월 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개정 2010년 5월 3일><개정 2011년1월10일> a. 연 1.400%: 2011년 1월 10일~2012년 1월 9일 b. 연 1.300%: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c. 연 1.190%: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d. 연 1.090%: 2014년 1월 10일 이후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현황, 연간(%)>		자료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운용자산규모 자료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문구 추가>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B(주식)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6. 14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2010. 12. 17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펀드코드 81767) <신설>	종류 C1(펀드코드 81767) 종류 C2(펀드코드 28731) 종류 C3(펀드코드 28732) 종류 C4(펀드코드 28733) 종류 C5(펀드코드 2873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 : 가입제한 없음 <신설>	종류 C1 :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 종류 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3 : 종류 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4 : 종류 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종류 C5 : 종류 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종류 C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 종류F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p>(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도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p> <p>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p> <p>(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⑥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상기 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 년 1 월 10 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제 25 조의 3 조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1, C2, C3, C4, C5, C-e, l, F 환매수수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종류 C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1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2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3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3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4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2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u>종류 C5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생략> <u>종류 C-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개정 2010년 5월 3일><개정 2011년1월10일> a. 연 1.400%: 2011년 1월 10일~2012년 1월 9일 b. 연 1.300%: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c. 연 1.190%: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d. 연 1.090%: 2014년 1월 10일 이후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자료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현황, 연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p>※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p>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u>2010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p>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u>2011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운용자산규모 자료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문구 추가>	<p>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